

#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 안 경 위

가. 발 의 자 : 최정순 의원 외 23명

나. 의안번호 : 제1230호

다. 발의일자 : 2019. 12. 18

라. 회부일자 : 2020. 1. 13

### 2. 제 안 사 유

- 현행 조례에는 정수처분 후 체납금을 완납하여야 정수처분을 해제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 빈곤한 사회적 약자는 체납금을 납부하지 못해 장기간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과 수수료를 미부과하는 추세에 따라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도록 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

### 3. 주 요 내 용

- 가.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금 완납이 어려운 수용가의 최소한의 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함(안 제43조제3항).
- 나.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 **4. 참 고 사 항**

- 가. 관련 법령 :
-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정수처분 해제 기준을 완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를 미부과하여 시민의 심리적 압박감 및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1) 정수처분 해제 요건 완화(안 제43조제3항)

- 정수처분(급수 중지)은 수도요금 징수금을 독촉 받고 지정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등 현행 조례 제4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음.
- 정수처분 해제는 정수처분의 원인이 되는 체납금이 1개월 이내에 완납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정(제 43조제3항)되어 있어, 고액 체납 영세상인이나 경제적으로 빈곤한 차상위 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정수처분 중 수용가의 돌발적인 환경변수<sup>1)</sup>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장기·고액체납 징수시 체납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들어 일부 체납금 분납 후 정수처분 해제를 요청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미비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안 제4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와 같이 1개월 이내에 체납된 수도 요금의 납부가 가능한 경우뿐만 아니라 정수처분 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

1) 위급환자 발생, 수돗물 생계수단의 영업행위 박탈 등

인해 체납금 완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수용가에 대하여 체납금의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정수처분 해제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공공성 강화 및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인 생활 보장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2) 정수처분 해제수수료 폐지(안 제43조제4항 및 제5항)

- 현행 조례 제43조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3천원의 해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정수처분 해제수수료는 연간 386만원<sup>2)</sup>으로 상수도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임.

- 그러나 정수처분은 징수 행정의 마지막 수단으로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상당하여 해제수수료 징수 과정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이로 인해 수도사업소 직원이 대납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또한, 정수처분과 달리 재산압류 해제시 수수료<sup>3)</sup>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안 제43조제4항과 같이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되어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처분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재산압류 등 다른 해제 수수료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2) 정수처분 해제 1,287건 × 3,000원/건 = 3,861천원

3) '13년 전자등기촉탁 업무개선에 따라 부동산등기압류 해제시 수수료 8,500원 미부과

## [참고사항]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수도요금·수수료 또는 공사비 등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독촉을 받고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몰래 쓴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설비 공사를 시행한 자
  4. 계량기(설치봉인 포함)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5. 정수처분 중의 급수설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자
  6. 업종이 다른 급수를 혼용하여 수도요금을 포탈하려는 자
  7. 제40조제5항을 위반한 자
  8.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게을리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9.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 ② 가정용 수도사용자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실시할 때는 사회 복지담당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정수처분의 해제는 의무자의 신청에 따르되 정수처분의 원인이 해소된 후가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 다만, 정수처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원인해소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제3항에 따라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해제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정수처분 사유가 수도요금 체납인 경우 가정용외의 수용가에게는 보증금을 징수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해제수수료, 보증금액, 납부방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